

06 _ 법학자 입장에서 보는 생명윤리

규칙과 원칙 지켜지는 사회

글 | 김현철 _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phlaw@ewha.ac.kr

유명한 법철학자 하트는 ‘법이란 규칙’의 체계라고 하였다. 드워킨은 법에는 규칙 이외에 원리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규칙은 규율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직접 규정하는 것이고, 원리는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규칙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할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갚기로 한 채무자가 돈을 잘못 세어서 99만 9천원을 가지고 왔다고 하자. 이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은 “채무자는 돈을 갚기로 한 날에 갚기로 약속한 액수를 채권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채무자는 ‘규칙’ 위반이다. 그러나 만일 채권자가 1천 원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선언하고 상당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한 것이다. 법에서는 이를 권리남용금지의 ‘원리’라는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다.

과학자 집단 스스로 윤리문제 해결해야

그런데 이러한 규칙이나 원리는 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윤리나 관습 혹은 종교규범의 세계에서도 규칙이나 원리는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윤리의 규칙이나 원리와 법의 규칙이나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법의 규칙이나 원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사실 법의 규칙이나 원리 중에는 기존의 윤리나 관습의 내용에서 유래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살인에 대한 형법의 규정은 법의 규칙이면서 동시에 윤리적 규칙이기도 하다. 이렇게 수많은 윤리 규칙들 중에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시민들이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법에서 정하게 된다. 다만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공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에 의한 윤리의 규율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도 이런 이유에서 윤리의 일종이기는 하나 법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즉 생명윤리의 내용 중에서 공권력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생명윤리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윤리’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과 ‘생명윤리법’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대단한 차이를 가진다. ‘생명윤리’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과학자 집단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노력에 맡겨진다는 뜻이 되지만, ‘생명윤리법’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강제를 통해 규율된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생명과학은 ‘윤리’적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윤리법’ 즉 예를 들어 공직자윤리법이나 변호사법의 법조윤리 조항들은 규율해야 할 행위의 양태가 그리 복잡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생명과학은 급속도로 새로운 분야가 발굴되고 있으며, 새로운 문제가 늘 생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번의 황우석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과학자 집단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생명과학의 연구들은 ‘비과학자’가 쉽사리 간섭하거나 규율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결국 생명과학은 그 전문성 때문에 그리고 그 역동성 때문에 과학자 집단 스스로 자율적으로 윤리

클로네이드사의 인간복제 성공 발표로 생명윤리에 대한 격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23일 시민 각계 인사 100인이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을 하고 있다.



인간배아복제

로가 자신에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가 만든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법령보다는 제정과 개정을 훨씬 쉽게 함으로써 생명과학이 갖는 역동성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생명과학자들을 만나 보면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와 내용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고를 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지라도 오히려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사실 연구자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은 불분명하고 모순이 있으며 연구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책상물림의 가이드라인들이다.

또한 연구자 동료에 의한 윤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의료분야에서는 IRB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는 현장 과학자와 시민사회의 성원들이 생명과학의 윤리와 안전의 문제를 머리 맞대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런 제도를 통해 법령과 가이드라인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긴박한 사안이나 생명과학 연구의 모니터링을 통한 감독 등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런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과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직접 법에 담을 수는 없는 일이다. 법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윤리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부 활동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에서도와 같이 배아연구, 불임치료, 유전자연구 등등에 대해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은 개별 입법의 형태로 하는 것이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법은 금지하려고 하지만 늘 금지되지는 않는다. 결국 행위자 스스로가 규칙과 원칙을 지키려는 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외부적인 강제는 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규칙과 원칙을 지키려는 의식,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법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단순한 금지보다는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된 것만 해도, 이번 황우석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은 충분하다고 믿는다. **ST**

와 안전의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집단이 자율적으로 윤리적인 의식을 갖추고 생명윤리 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번 황우석 사태에서 나타난 일부 과학자들의 행태와는 달리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개인 도덕의 차원에서 상당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연구자 집단의 전문적인 영역에 적용되는 윤리는 개인 도덕의 차원과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최초 황우석 연구의 연구원 난자 채취 문제가 공론화되었을 때 그것이 '헬싱키 선언'의 위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뉘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 등등의 기준과 원칙들은 과거에 경험한 인체 실험 등 끔찍한 경험을 거치면서 점차 체계를 잡아 간 것이다. 그러한 윤리 기준과 원칙의 성립 과정과 성립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원칙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교육은 기성의 생명과학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예비과학자들 즉 대학과 대학원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생명윤리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와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명과학 역동성 고려해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그리고 그런 교육과 함께 연구 현장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법령의 근거에 의해 국가가 표준적인 내용을 정할 수도 있고, 과학자 집단 스스로



글쓴이는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배아연구심의자문단 자문위원을 겸임하고 있다.